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 등재된 화학물질의 상세정보 제공을 위한 고시 제정 근거 마련과 관련하여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0847호, 2020. 7. 14. 공포)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일몰이 설정된 규제에 대한 정비 결과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7. 00. ~ 8. 00.) 진행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중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 잔류성오염물질란 중 “영 별표 1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 제20호 및 제22호에 해당하는 잔류성오염물질”을 “농약용도의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 잔류성오염물질의 함유량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별표 7 비고 제2호 중 “잔류성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하여야”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해야”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 중 “시·도지사는”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은”으로 한다.

별표 8의 제1호, 제2호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별표 2 제1호가목 및 다목의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분해야 한다.
2. 영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분해야 한다.

3. 영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분해야 한다.

별표 12의 업무내용란의 제2호 중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현황”을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행정처분의 공표 현황”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에 대한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그 폐쇄명령에 관한 청문 현황	연 1회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	------	---------------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스톡홀름협약 제9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부속서 에이(A)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4조(규제의 재검토) ----- ----- ----- ----- ----- -----.												
1. 제18조 및 별표 8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2014년 1월 1일	< 삭제 >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4.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대상기기등에 관한 신고·변경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	< 삭제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별표 2]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제3조 관련)	[별표 2]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제3조 관련)												
<table border="1"> <tr> <th>잔류성오염물질</th><th>함유량 기준</th></tr> <tr> <td>영 별표 1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 제20호 및 제22호에 해당하는 농약용도의 잔류성오염물질</td><td>리터당 0.1나노그램</td></tr> <tr> <td>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td><td>가. 액체상태의 물질: 리터당 0.05밀리그램</td></tr> </table>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	영 별표 1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 제20호 및 제22호에 해당하는 농약용도의 잔류성오염물질	리터당 0.1나노그램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가. 액체상태의 물질: 리터당 0.05밀리그램	<table border="1"> <tr> <th>잔류성오염물질</th><th>함유량 기준</th></tr> <tr> <td>농약용도의 잔류성오염물질</td><td>리터당 0.1나노그램</td></tr> <tr> <td>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td><td>가. 액체상태의 물질: 리터당 0.05밀리그램</td></tr> </table>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	농약용도의 잔류성오염물질	리터당 0.1나노그램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가. 액체상태의 물질: 리터당 0.05밀리그램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												
영 별표 1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 제20호 및 제22호에 해당하는 농약용도의 잔류성오염물질	리터당 0.1나노그램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가. 액체상태의 물질: 리터당 0.05밀리그램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												
농약용도의 잔류성오염물질	리터당 0.1나노그램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가. 액체상태의 물질: 리터당 0.05밀리그램												

	나. 액체상태 외의 물질 1) 금속판 등 기름을 흡수하지 않는 평면형태의 물질: 100제곱센티미터당 0.05마이크로그램 2) 구리선 등 기름을 흡수하지 않는 비평면형태의 물질: 킬로그램당 0.005밀리그램 3) 그 밖의 물질: 용출액 리터당 0.0005밀리그램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다.)	가. 액체상태의 물질: 리터당 100 피코그램 티이큐(pg-TEQ) 나. 고체상태의 물질: 그램당 3 나노그램 티이큐(ng-TEQ)

비고

1. 잔류성오염물질의 함유량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2. 영 별표 1 제30호에 따라 고시된 물질에 대한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7]

주변지역 영향의 조사 방법·범위 등(제15조제1항 관련)

1. ~ 2. (생략)

비고

1. (생략)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3. 시료채취지점 위치가 하천 등 대기 또는 토양의 시료 채취가 어려운 곳인 경우 시·도지사는 측정지점을 변경할 수 있다.

[별표 8]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제18조 관련)

1. 영 별표 1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 제20호 및 제22호의 물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분하여야 한다.
2.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분하여야 한다.

	나. 액체상태 외의 물질 1) 금속판 등 기름을 흡수하지 않는 평면형태의 물질: 100제곱센티미터당 0.05마이크로그램 2) 구리선 등 기름을 흡수하지 않는 비평면형태의 물질: 킬로그램당 0.005밀리그램 3) 그 밖의 물질: 용출액 리터당 0.0005밀리그램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다.)	가. 액체상태의 물질: 리터당 100 피코그램 티이큐(pg-TEQ) 나. 고체상태의 물질: 그램당 3 나노그램 티이큐(ng-TEQ)

비고

1. 잔류성오염물질의 함유량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2. 영 별표 1 제30호에 따라 고시된 물질에 대한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7]

주변지역 영향의 조사 방법·범위 등(제15조제1항 관련)

1. ~ 2. (현행과 같음)

비고

1. (현행과 같음)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해야 한다.
3. 시료채취지점 위치가 하천 등 대기 또는 토양의 시료 채취가 어려운 곳인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측정지점을 변경할 수 있다.

[별표 8]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제18조 관련)

1. 영 별표 2 제1호가목 및 다목의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분해야 한다.
2. 영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분해야 한다.

3.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을 다음 각 목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분하여야 한다.

가. ~ 다. (생 략)

4. (생 략)

[별표 12]

위임업무 보고사항(제23조의3 관련)

업무내용	보고 횟수	보고 기일	보고 자
1.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수출에 대한 승인 현황	연 1회	다음해 1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2.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u>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현황</u>	연 1회	다음해 1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3.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현황 및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영향조사명령 현황	연 1회	다음해 1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4. 잔류성오염물질 배출 사고 발생 신고의 수리 현황 및 조치명령 현황	수시	사고발생시	지방환경관서의 장
5.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징수 실적 및 체납 처분 현황	연 1회	다음해 1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6. 배출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현황	연 1회	다음해 1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 신 설 >			

3. 영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분해야 한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별표 12]

위임업무 보고사항(제23조의3 관련)

업무내용	보고 횟수	보고 기일	보고 자
1.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수출에 대한 승인 현황	연 1회	다음해 1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2.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u>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현황 및 행정처분의 공표 현황</u>	연 1회	다음해 1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3.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현황 및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영향조사명령 현황	연 1회	다음해 1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4. 잔류성오염물질 배출 사고 발생 신고의 수리 현황 및 조치명령 현황	수시	사고발생시	지방환경관서의 장
5.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징수 실적 및 체납 처분 현황	연 1회	다음해 1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6. 배출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현황	연 1회	다음해 1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7. <u>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에 대한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그 폐쇄명령에 관한 청문 현황</u>	연 1회	다음해 1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